

예산총칙

2008년도 [3회추경예산]

* 제1조 : 200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 총액	일시 차입 한도액
총 계	1,283,166,646	38,494,999
일반회계	941,071,918	28,232,158
특별회계	342,094,728	10,262,842
소 계	210,550,468	6,316,514
공유재산특별회계	8,028,270	240,848
주택사업특별회계	35,850	1,076
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	4,209,550	126,287
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	1,115,000	33,450
장기미집행특별회계	1,556,535	46,696
도시개발특별회계	28,815,082	864,452
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	3,695,960	110,879
교통사업특별회계	27,806,057	834,182
도시철도특별회계	135,288,164	4,058,645
소 계	131,544,260	3,946,328
공기업		
상수도사업특별회계	49,220,038	1,476,601
하수도사업특별회계	82,324,222	2,469,727

* 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‘세입·세출예산’ 과 같다. 다만,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.

* 제3조 : 2008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‘채무부담행위조서’ 와 같다.

* 제4조 : 2008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‘계속비조서’ 와 같다.

* 제5조 :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‘명시이월사업조서’ 와 같다.

* 제6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78,273,986천원으로 한다.

* 제7조 : 2008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49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* 제8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